2026년 제4회 건축해체 분야 전문위원회 심의 주요결과

[1호 안건: 마전동 982-8번지, 건축물 해체 허가에 관한 사항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 검단구	심의일자	2026. 11. 18.

건축종별	[ ] 신축, [ ] 증축, [ ] 대수선, [○] 기타
건 축 주	성명(법인명)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(주)

대지현황	대지위치	인천광역시 검단구 마전동		
	지번	982 - 8	관련지번	
	대지면적	1,402.1 ㎡	용도지역(지구,지역)	일반상업지역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442.83 ㎡	건폐율	31.58 %
	주용도	제2종근린생활시설,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	구조	철근콘크리트구조, 철골조
	최고높이	10.05 m	용적률	39.39 %
건축물 해체현황	해체 건축물 수 (해체구간)	1개동(전체 해체)	해체 연면적	552.27㎡
	석면 함유재 존치 여부	x	하수처리시설 철거 여부	○

	층수 지하 : 0 층/지상: 3 층
	건축물 동수 1 동
	연면적 합계 552.27 ㎡
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
	(해 체)분야	- 고압선 관련 한전 협의 철저 - 유류 저장탱크 등 장비 크레인 적용 - 인근 공동주택 주민 사전 설명할 것 - 철골구조 캐노피 압쇄공법이 아닌 크레인 장비 이용하여 절단 인양 공법 고려할 것 - 공동주택과 인접한 구간 지상 하부 일정 높이에 RPP 방음판 적용 검토할 것 - 캐노피의 철골 구조물과 지하 유류탱크 해체 인양시 굴착기를 배제하고 이동식크레인을 활용하여 인양을 해야함 - 어테치먼트 적용시 빔커터(EA30)를 적용할 것 - 협소한 인접지 주변에 방진·충격 등에 의한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안전한 해체가 될 수 있도록 시공할 것 - 도로변으로 고압선 및 보행자의 통행에 대한 안전 조치를 할 것 - RPP 패널은 공동주택 인접 주변으로는 설치를 권장

심의결과	[ ] 원안 의결 [○] 조건부 의결 [ ] 재검토 의결 [ ] 부결

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
- 원안 의결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
- 조건부 의결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
- 재검토 의결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
- 부결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

2026년 제4회 건축해체 분야 전문위원회 심의 주요결과

[2호 안건: 당하동 1237-4번지, 건축물 해체 허가에 관한 사항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 검단구	심의일자	2026. 11. 18.

건축종별	[ ] 신축, [ ] 증축, [ ] 대수선, [○] 기타				
건 축 주	성명(법인명) 동부건설(주)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	인천광역시 검단구 당하동			
	지번	1237 - 4	관련지번		
	대지면적	1,959.9 ㎡	용도지역(지구,지역)	일반상업지역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1,251.2 ㎡	건폐율	63.84 %	층수 지하 : 0 층/지상: 2 층
	주용도	가설건축물 (견본주택)	구조	일반철골구조	건축물 동수 1 동
	최고높이	18 m	용적률	98.42 %	연면적 합계 1,928.89 ㎡
건축물 해체현황	해체 건축물 수 (해체구간)	1개동(전체 해체)			해체 연면적 1,928.89㎡
	석면 함유재 존치 여부	x	하수처리시설 철거 여부		x

구 분	주요 심의결과
심의내용 (해 체)분야	- 해체작업순서 내부마감재 해체 등 전체적인 일정 시공에 맞게 재검토할 것 - 필수확인점 표기할 것 - 예정공정표는 실질적 시공자와 협의하여 재작성 후 해체감리자에게 승인을 받겠다라는 내용을 명기요함 (제출된 공사예정공정표는 보완이 필요함) - 외부철제 계단은 피난탈출구를 해체시 공정순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- 내부 마감재 철거에 대한 공사일정이 부족하므로 실제 공사 기간으로 예정공정표 재작성 바람

심의결과

[ ] 원안 의결 [○] 조건부 의결 [ ] 재검토 의결 [ ] 부결

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
- 원안 의결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
- 조건부 의결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
- 재검토 의결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
- 부결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